

 미국 장로교 연금국

장애 혜택

Disability Benefits

미국 장로교 연금국
혜택 플랜

차 례

장애 혜택은 어떤 혜택인가	1	장애 기간 중 고용이 되었을 때	10
장애 혜택 한눈에 보기	2	혜택 과도 지불	11
기타 자료	3	장애혜택 중단	12
자격	3	장애혜택 종료	12
장애의 정의	3	은퇴 연금 플랜과 장애혜택의 조정	12
혜택 범위	3	62세 이전에 장애자가 된 연금수령권이 있는 가입자	12
있던 병에 관한 조건	3	62세에서 65세 이전에 장애자가 된 연금수령권이 있는 가입자	12
장애혜택을 신청하는 방법	4	65세 정규 은퇴 나이가 지나 장애자가 된 연금 수령권이 있는 가입자	13
장애혜택이 거부되었을 경우	5	장애 상태에서 회복되었을 때	13
장애혜택 계산방법	5	직장 복귀	13
다른 장애수입에 의한 상쇄	5	사망	14
실제 급여	5	플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4
고용 직급에 따른 중간 급여	6	재심 청구	14
근무 시간수	6	재심 청구 연락처	14
사회보장 혜택	7	연락처	14
은퇴 연금 혜택	7		
근로자 보상(Worker's Compensation)	8		
장애 혜택 인상	8		
최소/최대 혜택	8		
장애 혜택 기간	8		
자동 입금	9		
혜택 지속	9		
메디케어	9		
장애혜택의 지속적인 평가 절차	10		
별도의 의학적인 평가	10		
직업 훈련	10		

이 책자와 공식적인 플랜 문서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플랜 문서가 우선합니다. 공식적인 플랜 문서가 필요하면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거나, 연금국 웹사이트 www.pensions.org 를 이용하십시오.

장애 혜택 플랜은 어떤 혜택인가

미국 장로교의 혜택 플랜 중 장애 플랜은 자체 출자된 교회 플랜으로 연금국이 관할합니다. 가입자가 완전히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혜택 플랜에서 말하는 “장애” 혹은 “장애자”의 정의는 3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연금국은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과 일반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하여 혜택, 재정적인 보조, 은퇴 주택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총회의 한 기관입니다.

Liberty Mutual은 고용주 혜택 플랜을 위하여 장애 청구서를 관리하는 회사들 중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국은 Liberty Mutual과 계약을 맺고 미국 장로교의 혜택 플랜 중 가입자들을 위한 모든 장애 청구에 관한 의학적인 케이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국이 모든 플랜 결정과 최종적인 재심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혜택은 장애가 시작되었을 때 가입자의 실제 급여와 (최대 \$90,000 까지) 전체 교회 중간 급여 중 더 높은 액수의 60 %에 기준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장애 혜택 액수가 장애가 시작되기 전 받던 급여의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 상태가 승인되면, 90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혜택지불이 시작됩니다.

장애가 시작된 후 의료, 사망, 연금, 개인선택 추가 사망 혜택 과 추가 장애 혜택은 가입자나 고용 기관이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장애 기간동안 계속 됩니다. 장애가 시작될 때 들고 있던 개인 선택 초과 혜택은 장애 기간동안 가입자가 매달 부담금을 지불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장애 혜택 보기

2

플랜 종류	장애 수입 보호 프로그램
자격	고용 기관이 혜택 플랜에 든 가입자를 위하여 사망 장애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을 때
부담금 지불	고용기관이 가입자의 장애시 수입 보호 혜택을 위한 비용 전액을 지불합니다.
대기 기간	90 일
지불 시작	급여가 중단된 다음날 혹은 장애가 시작된 후 90일후 중 나중 날짜
혜택	장애가 시작되었을 때 가입자의 실제 급여와 (최대 \$90,000까지) 교회 중간 급여 중 더 높은 액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장애 혜택이 시작될 때 최대 혜택은 장애직전 가입자가 받던 급여의 100%입니다.
최소 혜택	혜택 플랜에서 지불하는 최소 장애혜택은 연간 \$600 입니다.
최대 혜택	혜택 플랜에서 지불하는 최대 장애혜택은 연간 \$54,000 입니다.
다른 혜택	장애가 시작된 후 의료, 사망, 연금, 개인선택 추가 사망 혜택 과 추가 장애 혜택은 가입자나 고용 기관이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장애 기간동안 계속 됩니다. 장애가 시작될 때 들고 있던 개인 선택 초과 혜택은 장애 기간동안 가입자가 매달 부담금을 지불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수입 상쇄	<p>장애 혜택은 다른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음은 다른 수입의 예이며 이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p> <p>사회보장 장애보험, 사회보장 은퇴수입, 근로자 보상 (Worker's Compensation), 퇴역군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정부 프로그램</p> <p>고용기관이 후원하는 최대 실제 급여액이 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장애 혜택</p> <p>미국 장로교로부터의 은퇴 연금 혜택</p> <p>개인적으로 산 장애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자동차 사고나 다른 개인 상해 청구에 의한 판결, 합의, 혹은 보험금 지불 혹은 가입자가 장애로 인하여 받은 다른 모든 혜택금</p>
있던 병	장애혜택에 들고 첫 12개월안에 장애자가 되었을 경우 장애혜택은 전혀 지불되지 않으며, 플랜에 들기 전 12 개월안에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되었을 때 연금, 사망, 의료, 개인선택 사망, 초과, 장애혜택은 종료됩니다.
혜택 종료	장애상태에서 회복되거나, 직장 복귀, 최대 한도액까지 혜택을 받았거나, 사망 시에 장애 혜택은 종료됩니다.
신청 기한	장애가 시작된 지 12 개월안에 장애혜택 신청서를 Liberty Mutual이 받아야 합니다
직업 훈련	혜택 플랜은 가입자를 위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평가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규정 준수	장애자가 된 가입자는 필수적으로 의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제안된 치료 플랜에 맞게 치료를 받고 정기적인 케이스 검토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타 자료

가입자가 장애자가 되었을 때 연금국이 관장하는 은퇴 적금플랜, 403(b)(9)에 개인적으로 넣어둔 기금이 있으면 조기 인출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고 그 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상금, 퇴역 군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정부 프로그램, 고용기관이 후원하는 장애혜택, 판결에 의한 다른 곳으로부터 장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혜택과 가입자가 매월 받는 은퇴 연금만큼 장애 혜택은 줄어듭니다.

자격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혜택 플랜의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이 되는 고용 기관에서 근무중이었으며, 가입자의 고용 기관이 가입자를 위하여 사망장애 혜택을 위한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었고, 최근까지 부담금이 지불되었을 때,
- 개인적으로 혜택플랜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가입자가 자신의 사망장애 혜택을 위한 부담금을 최근까지 지불했을 때 (다시 말하면, 노회나 지난 고용 기관이 미국 장로교회의 자리를 구하는 중 일시적인 미고용 상태를 승인하거나 휴직 상태를 승인했을 때)

고용기관이 같은 직급에 있는 고용인들을 장애혜택에 등록시키거나 가입자가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근무할 때 가입자는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예이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교회의 안수받은 목회자 혹은 선교사
- 자격증이 있는 위임받은 교회 직원
- 기독 교육 담당자
- 음악 담당자
- 행정 매니저
- 일반 교회의 직원
- 노회/대회, 총회기관, 다른 기관의 일반 직원

장애의 정의

혜택 플랜, Article II, Section 2.1에 의하면: “장애 (혹은 장애자): 질병이나 신체 상해로 인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입을 받게 하던 정규 직업의 중요한 책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계

속적인 24개월간의 장애기간 후에 가입자의 교육수준, 경험 혹은 직업훈련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든 병이나 신체 상해를 말하며 위의 모든 조건은 연금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연금국은 가입자의 장애 상태를 평가하고 승인하기 위한 별도의 의료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페이지에 설명된 것처럼 연금국은 가입자의 장애 상태를 첫 24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검토하며, 플랜에 규정된대로 장애 상태를 계속적으로 수시로 평가합니다.

혜택 범위

가입자의 고용주는 장애 혜택 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급여와 다른 혜택을 받으면서 장애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국이 장애 플랜 가입을 포함하는 미국장로교 혜택 플랜 등록 신청서를 승인하면 장애 혜택이 시작됩니다.

혜택 플랜에 등록하려면 가입자는 혜택 플랜 등록 신청서를 기입하여 연금국에 보내야 합니다. 신청서는 혜택 플랜에 가입하려는 날로부터 31일 이내의 우편 날짜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있던 병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고 플랜에 등록하는 첫 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플랜에 의해 가입자의 장애 상태가 승인되면 장애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연금, 의료, 사망혜택을 포함하여 개인선택 플랜과 프로그램이 가입자나 고용기관이 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계속됩니다.

있던 병에 대한 조건

가입자가 혜택 플랜에 등록하기 전 12개월 이내에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질병에 의해 장애자가 되었을 때에는 장애 혜택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장애 혜택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국은 다른 혜택 (연금, 사망, 의료, 추가 사망, 치과, 추가 장애 혜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장애 혜택이 퇴직으로 혜택플랜이 종료된 후에도 제한된 기간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고용 기관이 혜택 플랜에서 탈퇴했을 때에는 무료 장애혜택이 없습니다. 가입자가 일년 근무 후에 사임했을 때 30일간의 무료 장애 혜택이 제공되며, 2년 근무후에는 60일, 3년이나 그 이상의 근무후에는 90일의 무료 장애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 플랜에 들고 있는 중에 장애 상태가 시작되었으나 12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연금국이나 Liberty Mutual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장애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

가입자가 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되었고 담당의사가 회복하는데 9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 장애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국으로 800-773-7752 (800-PRESPLAN)으로 전화하여 장애 신청서류를 요청하거나, 연금국 웹사이트 www.pensions.org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나 담당의사가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낸 양식이 미완성일 때 빠진 서류들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장애 신청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이 포함됩니다:

- 장애 혜택 신청서
- 정보공개 양식
- 의사 진단서
- 사회보장 혜택 공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자세히 검토하십시오.

신청서와 다른 양식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Liberty Mutual
P.O. Box 8417
Kansas City, MO 64114

서류를 기입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Liberty Mutual 800-838-5290으로 문의하십시오.

만약,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신청서를 기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유효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나 위임 양식을 연금국이나 Liberty Mutual로 보내 그 사람과 직원이 통화하도록 하십시오.

완성된 양식을 받으면 Liberty Mutual은 서류를 받았다는 편지를 보내고 가입자의 의사와 연락하여 장애 혜택을 받을만한 상태인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의학적인 증빙 서류를 받을 것입니다.

장애 혜택을 위한 신청서를 받는대로 Liberty Mutual이 가입자의 의사에게 연락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는 요구하는 의학적인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의사가 보내주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불행하게도 담당의사들의 회신이 오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Liberty Mutual로 보냈는지 가입자가 담당의사에게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Liberty Mutual로부터 온 평가에 기준하여 연금국은 혜택플랜의 장애자로 가입자를 승인하면, 가입자의 급여가 중단된 날 혹은 90일간 대기 기간이 지난 첫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장애 혜택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장애 혜택이 승인이 나면 한두 주일안에 첫번 수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연금국이 가입자의 90일 대기 기간 전에 장애 혜택을 승인하면 가입자는 장애자가 된지 91일이 되는 날에 첫 수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 혜택이 거부되었을 때

Liberty Mutual로부터 평가를 기준하여 접수된 의학적 인 자료들이 가입자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직업상의 책임을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상태이며 또 현재 직업에 상응하는 수입을 다른 직장에서 받을 수 없을 만한 상태인 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연금국은 장애 혜택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연금국의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4 페이지에 있는 재심 청구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장애 혜택이 계산되는 방법

매월 지불되는 장애 혜택은 가입자의 실제 급여가 최대 액수이며, 고용 직급에 따른 중간 급여와 가입자의 연간 실제 급여(최대 \$90,000)의 60% 중 더 높은 액수에 기준합니다. 장애 혜택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가?

- 다른 곳에서 받는 혜택
- 실제 급여
- 고용 직급에 따른 중간 급여
- 근무 시간수
- 사회 보장 혜택
- 혜택 플랜에서 받은 은퇴 연금 혜택
- 근로자 보상 (Workers' Compensation)
- 장애 혜택 인상
- 최소/최대 혜택

다른 장애 수입에 의한 상쇄

장애 혜택은 다른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입을 보충해 주는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다른 수입이 있을 때 그 만큼 줄어듭니다. 아래는 다른 수입의 예로써 이 외에 다른 수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 보장 장애 수입. 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사회 보장 은퇴 수입. 7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혜택 플랜 은퇴 연금. 7 페이지를 보십시오.
- 근로자 보상. 8 페이지를 보십시오.
- 퇴역 군인 프로그램과 정부 프로그램.
- 가입자의 고용기관이 후원하는 장애 혜택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 장애 플랜의 최대 급여이상인 실제 급여를 위한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보험(무보험 혹은 작은 보험을 포함하여)이 지불하는 모든 보상, 판결, 합의액
- 장애로 인한 제3자가 지불한 보상 (즉, 장애를 야기한 큰 사고 혹은 의료 과오 케이스로부터 받은 합의보상액)

실제 급여

고용기관은 가입자의 연간 총 실제급여를 연금국에 보고합니다. 이 실제 급여는 부담금과 혜택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년 가입자는 연금국에 실제 급여가 바로 보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장애 상태가 시작되면 급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장애 혜택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대액은 정해져 있으며 가끔씩 전체적인 급여가 인상될 때 조정됩니다.

장애 혜택의 예

다른 수입으로 인해 상쇄되기 전 실제급여에 기준함

	안수받은 목회자	전문직 직원	비전문직 직원
실제 급여	\$50,000	\$39,000	\$29,000
실제 급여의 60%	\$30,000	\$23,400	\$17,400
월 장애 혜택	\$2,500	\$1,950	\$1,450

실제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금국 발행물 *Understanding Effective Salary*를 참고하십시오. 이 책자가 필요하면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 www.pensions.org 를 이용해도 됩니다.

고용 직급에 따른 중간 급여

가입자의 실제 급여가 고용 직급에 따른 중간 급여보다 작을 때 장애 혜택은 해당 중간 급여에 기준합니다. 첫 장애 혜택은 가입자의 실제 급여의 100%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2008년 중간 급여

2007년 5월 1일자로 연금국에 보고된
급여 정보에 기준함

교회에서 시무하는 안수받은 목회자	\$49,000
전문직 일반 직원	\$36,300
비전문직 일반 직원	\$26,800

다음의 예들은 2008년 중간 급여에 기준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연금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가입자의 연간 실제 급여가 \$40,000 인 풀타임 안수받은 목회자일 때, 중간 급여가 가입자의 실제 급여보다 높기 때문에 장애 혜택은 2008년 중간 급여인 \$49,000 에 기준합니다.

$\$49,000$ 의 60% = $\$29,400$

따라서, 가입자의 연간 장애 혜택은 \$29,400 이고 매월 받는 혜택은 \$2,450 입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연간 실제 급여가 \$25,000 일 때 중간 급여의 60%(\$29,400)가 가입자의 실제 급여보다 많고 첫 장애 혜택이 실제 급여의 100%보다 많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 혜택은 \$25,000 입니다.

예

풀타임 비전문직 일반 직원의 연간 실제 급여가 \$20,000 이라면, 중간 급여가 가입자의 실제 급여보다 높기 때문에 장애 혜택은 2008년 중간 급여인 \$26,800 에 기준하여 계산됩니다.

$\$26,800$ 의 60% = $\$16,080$

따라서 가입자의 연간 장애 혜택은 \$16,080 이고 매월 받는 혜택은 \$1,340 입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실제 급여가 \$15,000 이면, 중간 급여의 60%(\$16,080)가 가입자의 실제 급여보다 많고 첫 장애 혜택이 실제 급여보다 많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 혜택은 \$15,000 이 됩니다.

근무 시간수

가입자가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35시간 미만) 근무했을 경우, 첫 장애 혜택은 가입자의 실제 급여 혹은 고용 직급에 따른 중간 급여 (근무 시간수에 따라 조정된) 중 더 높은 액수가 됩니다. 이 때 가입자의 실제 급여의 100%보다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예

교회 비서로 일주일에 20 시간 일하는 가입자의 실제 급여가 \$10,000 일 때, 장애 혜택은 실제 받는 급여 혹은 근무 시간수에 따라 계산된 중간 급여 중 더 높은 액수의 60%가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주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 타임 실제 급여	\$10,000.00
풀타임 35 시간, 2008년 중간 급여	\$26,800.00
근무 시간수에 따라 계산된 중간 급여	\$15,313.52
	$20/35 \times \$26,800$

\$15,313.52가 가입자의 실제 급여인 \$10,000 보다 많기 때문에 연간 장애 혜택은 \$15,313.52의 60% 인 \$9,188.11이 되고 매월 장애 혜택은 \$765.68 입니다.

가입자의 장애 혜택은 실제 급여인 \$10,000의 92%가 됩니다. 중간 급여 규정이 없었다면 가입자는 받던 실제 급여의 60%만 받게 되어 일년에 \$6,000만 받았을 것입니다.

사회 보장 혜택

혜택 플랜의 장애 혜택은 사회보장 혜택이나 다른 장애 혜택을 (개인적으로 산 보험은 제외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나 고용기관이 장애 수입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면 사회 보장 혜택이 장애 기간동안 가입자의 수입이 될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는 목회자들이 사회보장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들은 양심상의 문제로 사회보장 제도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회보장 제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가입자가 장애자가 되었을 때 사회보장 장애 수입을 받지 못할 경우에, 장애 혜택은 가입자가 사회보장 제도에 참여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을 계산하여 그 만큼 줄어듭니다.

모든 장애 상태가 사회보장 장애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금국은 먼저 가입자가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했다라면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지를 결정합니다. 받았을 것이라고 결정이 나면 사회보장 장애혜택을 계산하여 그만큼을 매월 받을 장애 혜택에서 제외시킵니다. 가입자의 장애가 승인이 되고 사회보장 장애수입은 받지 못했으리라고 판단되면 연금국으로부터의 장애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처음 받는 사회보장 혜택에 기준하여 사회보장 장애 수입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그만큼 줄어든 연금국 장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은퇴연금 수입이나 장애 수입 모두 연금국 장애수입을 줄어든게 합니다. 그러나, 장애 기간동안 가입자의 자녀들이 받는 가족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연금국 월 장애혜택 목표	\$2,500
월 사회보장 장애 수입 혜택	\$750
줄어든 월 장애 혜택	\$1,750
총 장애 혜택	\$2,500

사회보장 혜택은 매년 생활비가 오르는 비율에 따라 인상됩니다. 연금국으로부터 장애 혜택은 첫 사회보장 장애 혜택액수에 기준하기 때문에 이 인상분을 연금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회보장 혜택이 기본 혜택을 다시 계산할 경우에는 연금국도 장애 혜택을 다시 조정하도록 새로 계산된 사항을 연금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회보장 장애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연금국 혜택 플랜의 장애 혜택을 먼저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Liberty Mutual를 통하여 연금국은 장애자의 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Allsup, Inc.와 계약을 맺어 가입자들이 사회보장 장애수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도와줍니다. 그 기관은 무료로 장애자가 된 가입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회보장기관의 승인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가입자들을 돕기 위하여 연금국은 가능한 한 빨리 장애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회보장 혜택이 시작할 때까지 사회보장 혜택을 포함하여 연금국이 혜택전액을 지불합니다.

첫 사회보장 혜택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액수를 소급하여 일괄적으로 지불합니다. 연금국 혜택이 사회보장혜택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사회보장제도에에서 받은 혜택은 바로 연금국으로 환불해야 합니다.

혜택 플랜의 은퇴 연금 혜택

가입자가 62세 이후에 장애자가 되면, 연금국은 연간 은퇴 연금 혜택만큼 줄어든 장애 혜택을 지불하는데 다음의 두 날짜 중 나중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 65세 정규 은퇴 나이, 혹은
- 장애가 시작된 날.

연금국은 줄어든 장애혜택을 보충하기 위하여 받을 수 있으면 은퇴 연금 혜택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은퇴하더라도 가입자의 의료 혜택과 사망 혜택은 장애 기간동안 계속합니다.

은퇴 나이가 되었는데도 은퇴하지 않은채로 65세 이후에 장애자가 되었을 때 연금국은 은퇴했다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만큼 장애혜택을 줄입니다. 만약, 가입자의 은퇴 연금이 장애 혜택보다 많을 때에는 최소 장애 혜택인 연간 \$600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정규 은퇴 나이인 65세나 장애 시작 날짜가 지나서도 은퇴연금 받는 것을 연기하면, 65세가 지나 은퇴하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추가 연금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연금혜택과 65세 이후에 은퇴할 때 연금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금국 발행물인 Retirement Pension and Survivor Benefits 를 참고하십시오.

근로자 보상 (Workers' Compensation)

가입자의 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근로자 보상 제도에 의해 보호된 상태라 하더라도 가입자는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플랜의 장애 혜택은 근로자 보상과 다른 종류의 장애 혜택을 보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연금국에 지불되는 모든 혜택은 근로자 보상에서 받는 액수만큼 줄어듭니다. 만약, 근로자 보상액이 연금국 장애 혜택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입자는 연금과 의료 혜택을 받는 것 이외에 연간 최소 장애 혜택인 \$600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 보상 회사로부터 일괄 지급 혜택으로 한번에 받을 경우, 연금국 장애 혜택은 일괄 지급 혜택이 의도했던 기간만큼 계산하여 줄어들어 매달 계산됩니다.

장애 혜택 인상

매년 연금국은 연금국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장애혜택 인상분 (Disability Benefit Increase, DBI) 만큼 장애 혜택을 인상합니다. 연금국은 사망장애 기금의 투자수익, 계리상의 계산, 준비금 상태 등을 감안하여 인상분을 결정합니다.

승인이 되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급되던 모든 장애혜택은 인상분만큼 인상됩니다.

장애 혜택 인상분은 가입자의 장애 혜택에 적용될 % 인상입니다.

예

풀타임으로 근무하던 목회자가 장애자가 되었을 때 받던 연간 실제 급여가 \$35,000 일 때

실제 급여	\$35,000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중간급여	\$49,000
중간급여의 60%	\$29,400
월 장애 혜택	\$2,450
장애혜택 인상분 3%	\$73.50
새로운 월 장애혜택	\$2,523.50

최소/최대 혜택

혜택 플랜에 의한 최소 연간 장애 혜택은 \$600 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일년에 \$600, 한달에 \$50 미만의 장애 혜택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혜택 플랜은 장애 혜택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제급여 액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 혜택을 계산하기 위한 최대 실제 급여는 \$90,000 입니다. 가입자의 실제급여가 \$90,000을 넘을 때에는 \$90,000에 기준하여 계산됩니다. 가입자의 실제급여가 \$100,000 이 넘을 때에는 추가 장애혜택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으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연금국 웹사이트인 www.pensions.org 를 이용하십시오.

장애 혜택 기간

가입자의 장애상태가 계속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 장애혜택을 받게 됩니다.

- 다시 근무하게 되었을 때
- 플랜에 있는 장애상태의 정의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 65세가 되었을 때
- 62세 혹은 그 후에 장애자가 된후 아래 열거된 최대 기간이 지났을 때
-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62세나 그 후에 장애자가 되었을 때, 혜택이 지불되는 최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기간
62세	3.5 년
63세	3 년
64세	2.5 년
65세	2년
66세	1.75 년
67세	1.5 년
68세	1.25년
69세 혹은 그 이상	1 년

은행 자동 입금 (Electronic Funds Transfer)

연금국은 모든 가입자들이 매월 받는 혜택 수표를 바로 은행 계좌로 (checking account 혹은 savings account) 들어가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은행 계좌로 바로 들어가게 하려면 해당 양식인 Electronics Funds Transfer (EFT)를 기입하여 보내면 됩니다.

가입자 거주 지역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편 배달이 되지 않을 때는 연금국은 장애혜택 수표를 보내지 않습니다.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되도록 하면 혜택을 중단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계속됩니다

가입자가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 가입자나 고용 기관이 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다른 혜택들이 계속됩니다.

다음의 혜택들이 계속됩니다.

- 의료 플랜
- 플랜의 사망 혜택
- 장애자가 될 당시 들고 있던 개인 선택 사망 혜택
- 장애자가 될 당시 들고 있던 연금 플랜의 연금 크레딧 축적. 연금 크레딧은 장애자가 될 당시 가입자의 실제 급여와 고용 직급에 따른 중간급여 중 더 큰 액수에 기준하여 쌓입니다. 이 때, 실제급여는 장애혜택 계산을 위한 최대 액수 규정이 있습니다. 연금 크레딧은 65세나 장애가 시작된 날 중 더 늦은 날 이후에는 쌓이지 않습니다.

장애자가 될 당시 개인선택 초과 보험에 들고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부담금을 지불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혹은 그 이상 된 대부분의 사람들과 65세가 안되었더라도 장애자가 된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줍니다. Medicare Part A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Medicare Part B는 매달 불입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매월 받는 사회 보장 혜택에서 공제됩니다.

플랜 혜택은 가입자가 Medicare Part B 혜택을 받도록 요청하며 그 비용을 환불해 줍니다. 그러나, 가입자 부부가 모두 플랜에 들어있을 경우나 배우자의 의료 보험이 가입자의 일차 보험일 때는 제외됩니다. 메디케어가 일차보험이 아닐 때에는 가입자가 Medicare Part B에 가입함으로써 가입자나 플랜 모두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 Medicare가 이차 보험인 것을 확인하고, 가입자가 은퇴할 때 혹은 다른 의료 보험이 종료되었을 때까지 Medicare Part B 등록을 연기하여 추가 벌금이 가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환불받기 위하여 가입자는 메디케어 카드 사본을 연금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되는 금액은 매달 받는 장애 혜택에 포함될 것입니다.

혜택 플랜의 메디케어 보충 혜택은 (Medicare Supplement) 메디케어가 “creditable coverage”로 간주하는 처방약 혜택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메디케어 Part D 혜택*만큼 혹은 더 나은 혜택으로 간주하는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보충 프로그램 가입자는 현재 Medicare Part D 처방약 프로그램에 따로 들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메디케어 보충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Medicare Part D에 가입할 때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예외: 저소득자들은 Medicare Part D 를 위한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만약 Medicare Part D 의 “special help”에 해당되면 Medicare Supplement 보다 더 나은 처방약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상태의 지속적인 평가 절차

일단 장애 혜택이 승인되면 그것은 제한된 기간동안입니다. 첫 24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의 장애 상태를 재검토하여 장애상태가 24개월이 지난 후에도 더 큰 의미의 장애의 정의에 맞는지를 결정합니다. 연금국은 장애 기간동안 수시로 장애 상태를 점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Liberty Mutual은 재검토 절차에 관하여 가입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가입자와 담당 의사는 Liberty Mutual로 모든 의학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Liberty Mutual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장애 혜택이 계속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가입자와 담당 의사들이 승인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Liberty Mutual로 요청한 여러 서류를 구비하여 보내지 않으면 장애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의학적인 평가

어떤 경우에는 Liberty Mutual이 가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제3의 의료 평가자를 만나보도록 추천하기도 합니다. 가입자에게 날짜, 시간, 약속 장소 등을 알려줍니다. 만약 가입자가 다른 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지킬수 없을 때는 통보를 받은지 일주일 안에 Liberty Mutual에 알려 새로 약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 평가를 받을 때까지 장애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 훈련

장애 혜택 규정에 의하면, 장애혜택은 가입자의 직책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적정선의 비슷한 수입을 받을수 있는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승인됩니다. 이 때, Liberty Mutual은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때 이전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를 검토합니다. 장애가 시작된 지 24개월 안에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가입자는 구직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평가는 가입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입자의 교육, 경험과 훈련에 맞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때에는 직업 훈련 전문가가 풀타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자와 함께 노력합니다. 담당 의사가 풀타임 직장은 점차로 시간을 두고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 Liberty Mutual은 그기간 중의 고용과 장애 플랜이 가입자가 풀타임 직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입자의 수입을 돕도록 합니다.

어떤 때는 연금국이 Liberty Mutual이 추천하면 임시 근무 기간이나 다른 재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장애 기간 첫 24개월이후에 가입자의 교육, 경험이나 훈련 등에 맞는 직장으로 돌아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장애 혜택은 종료됩니다.

가입자가 선의의 구직능력 평가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협조하지 않을 때 연금국은 장애 혜택을 중단 혹은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기간동안 고용되었을 때

장애기간동안 받은 모든 급여, 사택 혹은 주택비, 다른 모든 종류의 모든 수입은 연금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 가입자가 근무하기를 원하면 직업 전문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가입자는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한주당 근무 시간수
- 하는 일
- 급여
- 담당의사로부터 승인서

이 승인서에는 주치의가 한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수,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과 함께 언제 풀타임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혜택 플랜은 임시 근무기간동안 또 고용 훈련기간 동안 고용을 제한합니다. 정규 고용 상태로 돌아가면, 가입자는 더 이상 장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장애 혜택은 종료됩니다. 미국 장로교 안에서 혹은 밖에서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정식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 전문가가 승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임시 목회직이나 다른 직책의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미리 연금국에 알리십시오.

장애혜택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기간은 가입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담당 의사의 소견, 근무 시간수, 연금국 밖의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혜택의 일부 혹은 전부가 이 승인된 고용기간동안 계속 지불됩니다. 혜택의 정도는 이 고용기간동안 가입자의 급여나 가입자의 다른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자는 매년 W-2 양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설교자는 W-2 양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금국에 급여설명서(pay stubs)나 1099 양식, 지난해 IRS에 제출한 1040 양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국 혜택 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고용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승인이 되면, 고용 기관은 가입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입자가 이미 혜택 플랜의 의료 혜택과 사망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자가 될 당시 연금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면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 크레딧도 계속 쌓입니다. 장애자가 될 당시 개인선택 추가 사망 혜택이나 초과 혜택에 들고 있었으면 계속 그 혜택을 들 수도 있습니다. 추가사망 혜택은 장애자가 될 당시 들고 있던대로 (가입자, 배우자, 부양 자녀) 같은 혜택을 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계속 갖게 됩니다. 개인선택 초과 혜택은 가입자가 부담금을 지불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혜택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는 장애 혜택을 전액 받고 있는 동안 전에 받던 실제 급여의 40%까지 벌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급여와 다른 보수가 합하여 40% 한도액을 넘으면 장애 혜택은 그 40%가 넘는 부분만큼 줄어듭니다.

예

실제 급여	\$35,000.00
매월 장애 혜택 (중간 급여 \$49,000 의 60%)	\$2,450.00
실제 급여 \$35,000 의 40%	\$14,000.00
승인된 연간 급여액	\$15,000.00
월 한도액을 넘는 액수	\$83.33
새로 조정된 혜택 (\$2,450 - \$83.33)	\$2,366.67

혜택 과도 지불

어떤 경우에는 가입자가 혜택 규정에 허락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락된 혜택액수와 가입자가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으면 장애 혜택 부서로 바로 연락하십시오.

혜택 지불이 과도하게 되었으면 장애기금으로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 혜택이 지난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되고, 연금국 장애 혜택이 그만큼 줄지 않고 그대로 지불되었으면 과도하게 지불된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허락되어 직장에 복귀했을 때 40%의 허락된 급여 한도액을 넘어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의 재정 상태가 한꺼번에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나누어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국으로 24개월간 과도 지급액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도 지출액은 매월 받는 장애 혜택에서 공제됩니다. 할부 반환 계약서에 서명하여 연금국으로 보내면 매월 그 기간동안 반환하게 됩니다.

연금국에 과도 지출액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할부 반환 계약서를 보내오지 않았을 때는 과도 지출액 전액이 반환될 때까지 가입자의 장애혜택이 중단됩니다.

만약 24개월안에 전액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원하는 월 반환액수와 가입자의 월별 총 수입과 지출 항목을 열거하는 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금국이 그 자료를 검토한 후 가입자의 반환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혜택 중단

만약 장애 혜택을 받는 가입자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연금국은 혜택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지키지 못하면 가입자의 혜택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금국의 요청에 의해 사회보장 장애혜택을 신청하는 것
-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
- 담당의사의 적절한 의학적인 지시를 따르는 것
- 제안된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것
- 직장에 복귀한 후 Liberty Mutual에 통보하는 것.

연금국은 가입자가 중범죄자로 판결받았을 때 혜택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혜택 종료

연금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장애혜택을 종료합니다.

- 은퇴하거나, 9페이지 표에 있는 것처럼 65세가 되거나 최대 장애기간이 지났을 때
- 3페이지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장애 상태에서 회복되었을 때
- 직장에 복귀했을 때
- 사망했을 때
- 혜택 플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은퇴 연금 플랜과 장애혜택의 조정

가입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국에 의해 장애 상태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 장애혜택은 계속 됩니다. (만약 장애 혜택이 62세가 넘은 후에 시작되었으면, 특정한 기간후에 종료됩니다. 9페이지 표를 참고하십시오.)

장애자가 되기 전에 혜택플랜의 연금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으면, 장애 혜택은 가입자가 65세가 될 때 혹은 9페이지에 있는 최대 기간이 되면 더 이상 지불되지 않습니다.

62세 이전에 연금 수령권이 있는 가입자가 장애자가 되었을 때

가입자가 연금 플랜의 정규 은퇴나이가 (현재 65세) 다 되어가면 연금국은 은퇴 신청서 서류를 보냅니다. 장애 혜택은 가입자는 65세가 되는 달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계속해서 수입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은퇴 연금 혜택을 받든 안받든 장애 혜택이 중단되는 때로부터 적어도 4주 이전에 완성된 서류를

연금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국은 가입자가 장애상태로부터 은퇴 상태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가입자가 64세가 되면 앞으로 받을 연금 혜택액수를 추정하여 알려줍니다. 매년 받는 연간 혜택 설명서에도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65세가 되기 전 2달전에 연금 전문가가 은퇴 연금 종류를 검토하도록 연락합니다.

자매혜택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입자들을 포함하여 연금 수령권이 없는 가입자는 마지막 장애 혜택을 65세가 되는 달 첫날에 받게 됩니다. 그날이 지나면 혜택 플랜으로부터 더 이상의 혜택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62세부터 65세 이전에 장애자가 된 연금 수령권이 있는 가입자

가입자가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은 가입자가 정규 은퇴 나이가 되면 은퇴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65세가 되면 연금 크레딧이 더 이상 쌓이지 않게 되고 장애 혜택은 은퇴 연금 혜택 액수만큼 줄어듭니다. (가입자가 받게 될 경험분배를 포함하여)

가입자가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에 등록하면 메디케어 보충 프로그램으로 (Medicare Supplement)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의료 지속 프로그램으로 (Medical Continuation Program) 의료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들도 적절한 의료혜택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혜택들과 사망 혜택은 장애 기간동안 계속 제공됩니다.

9페이지에 있는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되면, 월 장애혜택과 사망 혜택 모두 끝이 납니다. 만약 의료 보험 혜택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가입자와 부양 가족들에게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부터는 가입자는 은퇴자로서 받는 사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은퇴 연금을 받는 것을 연기하기를 원하면 장애 혜택은 예상되는 은퇴 연금 혜택만큼 줄어 들고 연금 크레딧은 더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65세가 지나 은퇴를 미루면 추가로 연금이 나이에 따라 가산됩니다.

예

가입자가 63세에 장애자가 된 것을 승인되었을 때 최대 장애 기간은 3년입니다. 장애 혜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3세부터 65세까지 장애 혜택	\$30,000
65세에 받을 연간 은퇴 연금 혜택	\$25,000
65세부터 66세까지 연간 장애 혜택	\$5,000

장애 혜택은 66세에 끝납니다.

모든 장애 혜택의 최소액은 연간 \$600, 월 \$50 입니다.

정규 은퇴나이 65세가 지난후 장애자가 된 연금 수령권이 있는 가입자

가입자가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입자는 장애 상태가 된 날부터 은퇴 연금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장애기간동안 더이상 연금 크레딧이 쌓이지 않고
- 장애 혜택이 은퇴 연금 액수만큼 줄어듭니다. (받게 될 경험분배를 포함하여)

가입자가 메디케어 Part A와 Part B에 등록하면 메디케어 보충 프로그램으로 (Medicare Supplement)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의료 지속 프로그램으로 (Medical Continuation Program) 의료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부양 가족들도 적절한 의료혜택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혜택들과 사망 혜택은 장애 기간동안 계속 제공됩니다.

9페이지에 있는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되면, 월 장애혜택과 사망 혜택 모두 끝이 납니다. 만약 의료 보험 혜택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가입자와 부양 가족들에게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부터는 가입자는 은퇴자로서 받는 사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은퇴 연금을 받는 것을 연기하기를 원하면 장애 혜택은 예상되는 은퇴 연금 혜택만큼 줄어 들고 연금 크레딧은 더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65세가 지나 은퇴를 미루면 추가로 연금이 나이에 따라 가산 됩니다.

예

만약 연금국이 실제급여 \$50,000 를 받던 가입자의 나이 67세에 장애자가 된 것을 승인하면 최대 장애 기간은 1.5년입니다. 장애혜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7세에 지불될 연간 은퇴 연금 혜택	\$28,000
67세부터 68.5세까지 연간 장애 혜택 (장애 혜택 \$30,000 - \$28,000 은퇴 연금 혜택)	\$2,000

장애 혜택은 68.5세에 끝이 납니다.

모든 장애혜택은 최소액수가 연 \$600, 월 \$50 입니다.

장애상태에서 회복되었을 때

가입자가 더이상 장애상태가 아닌 것으로 연금국이 결정하면, 가입자의 장애혜택은 끝이 납니다. 장애상태가 아니라는 결정은 지난 24개월 동안 가입자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가 이전 직장 혹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장애 상태가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Liberty Mutual은 가입자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가입자가 장애상태가 더 계속되어야 한다고 느끼면 추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 복귀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 고용이 되면 바로 Liberty Mutual 로 보고해야 합니다. 시험적인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직장일은 성격상 재활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Liberty Mutual에 미리 보고되어야 합니다. 10-11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일하는 것을 Liberty Mutual에 보고하지 않으면 장애 혜택은 종료됩니다.

병이나 상해가 회복되어 담당의사가 다시 일해도 좋다고 허락하면 가입자는 바로 Liberty Mutual에 일하기 시작하는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그날부터 장애 혜택이 종료됩니다. 고용 기관이 혜택 플랜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니면 그 날부터 다른 모든 혜택도 끝이 납니다. Liberty Mutual에 보고하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여 계속 장애혜택이 지급되었으면 연금국에 받은 장애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망

가입자가 사망하면 장애 혜택이 종료됩니다. 유가족은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장애혜택은 받아도 됩니다. 가족들에게 사망혜택에 관하여 알리십시오. 수혜자가 바로 지정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혜택 플랜은 장애 혜택을 받는 가입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장애 혜택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로 담당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제 3의 의학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연금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플랜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장애 혜택이 중단된 후 다시 규정대로 하면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모든 플랜 혜택들이 종료됩니다.

재심 청구

장애혜택 신청이 거절되거나 장애 혜택이 종료되면 가입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금국은 2차에 걸친 재심절차가 있습니다. 첫번 재심 청구는 재심청구를 하려는 결정을 받은지 180일안에 Liberty Mutual에 보내야 합니다. 최종적인 재심청구는 첫 재심청구 결과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연금국으로 (the Board of Pensions, Appeals Board Secretary) 보내야 합니다.

모든 재심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가입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Liberty Mutual과 연금국은 60일안에 답을 하려고 노력하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심청구 연락처

1차 재심청구

Liberty Mutual
 PO Box 8417
 Kansas City, MO 64114

최종 재심 청구

Appeals Board Secretary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연락처

Welfare Benefits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제외)
 동부시간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전화 800-773-7752 (800-PRESPLAN)

TDD 877-522-7948

대표 전화 215-587-7200

Fax 215-587-6215

Email healthcare@pensions.org

Website www.pensions.org

Liberty Mut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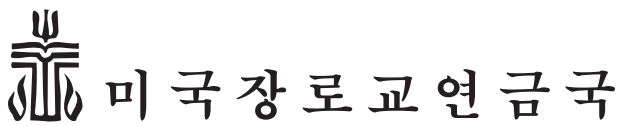
PO Box 8417, Kansas City, MO 64114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제외)

중부시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전화 800-838-5290

Fax 603-334-0366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800-773-7752 800-PRESPLAN www.pensions.org

© 2007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USA)

DSB-100 3/08